광고박물관 운영 규정

제정 2017. 1.25 시행 2017. 2. 1 개정 2020. 5.27 시행 2020. 6. 1 개정 2022. 1.14 시행 2022. 1.20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광고박물관(이하 "박물관"이라 한다)의 전시, 자료관리 조사연구, 교육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운영 목적) 박물관은 공익적 교육문화 인프라로서 국민들에게 광고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전시와 교육 등을 통해 광고 산업과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운영한다.
- 제3조(적용범위) 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과 달리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.
- 제4조(업무)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- 1. 전시 운영 및 관리 업무
 - 2. 광고자료의 조사, 수집, 보존, 관리 업무
 - 3.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업무
 - 4. 기타 박물관 설립 및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및 업무
- 제5조(업무 권한) ①박물관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박물관 운영 부서의

국장이 총괄한다.

- ②박물관 운영 부서의 국장이 부재중이거나 업무를 일임한 경우에는 박물관 운영 부서의 팀장이 총괄한다.
- ③박물관 운영의 실무는 박물관 운영 부서의 담당자가 전담한다.

제2장 박물관 전시 운영 및 관리

- 제6조(개관 및 휴관)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 이외에는 매일 개관한다.
 - 1. 정기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과 법정 공휴일로 한다.
 - 2. 임시 휴관일은 노동절, 회사 창립기념일, 회사 노조 창립기념일로서 박물관 운영 상황에 따라 개관할 수 있으며, 개관했을 경우 근무자는 대 체 휴무를 실시할 수 있다.
 - 3. 박물관 운영 부서의 국장은 시설의 보수, 안전 점검, 전시물 교체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휴관을 정할 수 있다.
- 제7조(관람 시간) 박물관의 관람 시간은 다음과 같다.
 - ①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한다.
 - ②박물관 운영 부서 책임관(국장)은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- 제8조(관람료) ①관람료는 무료이다.
 - ②박물관 운영 부서의 국장은 경우에 따라 관람과 관련된 홍보물, 교육

자료, 전시자료 등을 유료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유료로 할 수 있다.

- 제9조(관람 금지 및 제한) 관람객의 안전, 전시물의 보호 등 박물관의 정상 운영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박물관입장과 관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.
 - 1.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
 - 2.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사람
 - 3.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위험물이나 물품을 소지한 사람
 - 4. 소란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
 - 5.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이나 허가받지 않고 전시물을 만지는 사람
 - 6. 박물관 안에서 영리행위를 하는 사람
 - 7.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, 단, 장애인 안내견은 제외
- 제10조(변상 조치) 관람객이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 복구를 요구하거나 해당 물품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- 제11조(전시실 관리) 전기·소방·보안 등 전시 시설에 대한 일반적 관리부 분은 박물관이 있는 건물 전체 시설관리부서에서 담당한다. 다만, 전시 자료 등 콘텐츠와 관련된 부분은 박물관 운영 부서에서 담당한다.
- 제12조(전시실 점검) ① 박물관 운영 부서는 전시자료 이상 유무 및 관람 객 현황에 관한 점검을 휴관일을 제외하고 점검일지(별지 서식 제1호)에 1일 1회 실시한다. <개정 2022.1.14.>
 - ② 박물관 전시 시설의 주요 비품 또는 소모품에 대한 사용 현황을 관

리대장(별지 서식 제2호)에 기록해두어야 한다.

제13조(시설 사용) 박물관 전시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공문을 통해 신청 접수를 하고 박물관 운영 부서의 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3장 광고자료 조사·수집·관리

- 제14조(용어의 정의) ①광고자료라 함은 광고와 관련하여 조사·수집·보존·연구·전시·교육 등 박물관 운영을 위해 구입·수증·이관·수집·기탁된 것 가운데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무형의 모든 것들을 말한다.
 - ②기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박물관에 양도함을 말하며, 이를 박물관 자료로 수입하는 것을 수증이라 한다.
- 제15조(자료 조사 및 수집) ①광고자료의 조사는 박물관의 전시와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고, 귀중한 문화유산의 보존 차원에서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국내외 광고 관련 문화·예술·산업·학문 등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.
 - ②광고자료의 수집은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한다.
 - ③광고자료 중에서 문화유산의 보존 차원에서 유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귀중한 것은 사규에 근거해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할 수 있다.
 - ④광고자료를 구입할 때에는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료구입심의 및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행하여야 한다.
- 제16조(자료 수증) ①광고박물관은 다른 박물관,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자

료를 기증 받을 수 있다.

- ②개인 또는 단체가 자료 기증 의사를 밝힐 경우, 박물관 운영 부서 담 당관(전문위원)은 사전조사를 하고 책임관(국장)은 수증여부를 결정한다.
- ③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기증원(별지 서식 제3호) 을 작성하여 박물관에 신청하여야 한다.
- ④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증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.
- 1. 소장경위·출처·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
- 2. 박물관에서 필요치 않은 자료 또는 문화유산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
- ⑤박물관은 자료를 기증 받을 경우 명칭, 수량을 기록한 목록과 함께 자료수증증서(별지 서식 제4호)를 교부하여야 한다.
- 제17조(자료 등록 및 관리) ①입수된 자료는 자료대장(별지 서식 제5호)과 자료카드(별지 서식 제6호)에 기록하여 보관한다.
 - ②디지털 아카이브 자료의 경우는 원본보존, 훼손방지 및 활용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관리한다.
- 제18조(출납) ①소장 자료를 출납하는 경우 자료출납대장(별지 서식 제7호)에 그 상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 - ②소장 자료의 관외 대여는 박물관 운영 부서 책임관(국장)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19조(수장고 출입) ①수장고란 박물관 자료가 소장되어 있는 일정 장소를 말한다.

- ②박물관 운영 관련자를 제외한 그 외 사람이 직무상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박물관 운영 부서의 담당관(전문위원)에게 보고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③출입하는 자는 수장고관리일지(별지 서식 제8호)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.
- 제20조(자료 이용) ①자료의 복제·열람·촬영 등과 같이 일정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는 자(개인 또는 단체)는 공문, 방문 신청, 온라인 신청 등으로 접수해야 하고, 자료이용 허가신청서(별지 서식 제9호)를 첨부하여야 한다.<개정 2020.5.27>
 - ②저작권 등과 관련된 법적 사항은 광고자료를 이용하려는 자(개인 또는 단체)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.
 - ③자료 이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자로 한다.<개정 2020.5.27>
 - 1.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박물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
 - 2. 자료, 비품 및 시설의 오손, 훼손 또는 파손행위를 하는 자
 - 3. <삭제 2020.5.27>
 - 4. <삭제 2020.5.27>
 - ④박물관 운영 부서의 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료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 - 1. 자료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
 - 2. 자료 이용이 박물관 또는 공사의 대외적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

- 3.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
- 제21조(폐기 처분) ①소장 광고자료의 폐기 처분은 박물관 운영 부서 담당 관(전문위원)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인 박물관 운영 부서의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②소장 광고자료의 폐기 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.
 - 1. 부패, 파손 등 그 정도가 극심하여 소장 광고자료의 원형 상태로 복 원·보수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
 - 2. 광고 관련 역사·문화·예술·산업·학문 등을 고려했을 때 전시·교육·보 존 등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3. 기증·구입 등 수집활동을 통해 최근 입수된 광고자료와 동일한 종류 의 기존 소장 광고자료 중 소장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4. 기타 박물관 운영 부서의 국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
제4장 박물관 교육

- 제22조(교육 프로그램) 박물관은 설립목적과 교육취지에 부합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·보급할 수 있다.
- 제23조(교육 대상) 박물관 교육대상은 어린이부터 성년까지 해당되며 프로그램에 따라 나이, 학력, 경력 등을 제한할 수 있다.
- 제24조(지원 절차) 박물관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지된 기간에 지원방법에 따라 지원하여야 하며, 박물관 교육 대상에 해당되어야 한다.
- 제25조(교육생 선발) 교육 수강자 선발은 접수시 선착순으로 함을 원칙으

로 한다. 다만 교육 프로그램별 성격에 따라 면담 또는 협의를 거쳐 선발할 수 있다.

제5장 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

- 제26조(구성) ①박물관의 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해 광고계, 학계, 박물관계 전문가와 공사 임직원으로 구성된 "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"(이하 "위원 회"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
 -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내외로 구성한다.
 - ②위원회 위원장은 공사 박물관 운영 부서의 국장이 맡는다.
 - ③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, 연임할 수 있다.
- 제27조(운영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②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.
 - ③위원회는 연간 1회 또는 2회 개최하며, 2회일 경우 전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개최한다.
 - ①중요한 안건에 대한 자문이 필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권한으로 개최기 간에 관계없이 소집할 수 있다.
 - ⑤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회의 수당과 필요한 경우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 - ⑥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박물관 운영 부서의 팀장이 간사를 맡는다. 간사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기록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1.1

제6장 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

- 제28조(목적) 박물관의 자원봉사는 봉사정신 함양, 자아실현의 기회 제공, 학교 교과과정 연계, 광고에 대한 이해 확산, 광고산업과 문화발전을 위해 운영한다.
- 제29조(봉사 범위) 자원봉사는 박물관과 광고도서관의 업무와 관련된 안내 또는 자료정리 등과 같은 일로 한정한다.
- 제30조(자격 대상) 자격 대상은 박물관 자원봉사에 참여하여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.
- 제31조(신청 및 선발) ①자원봉사 신청은 박물관 홈페이지에 신청하고자하는 자원봉사의 개요를 등록하고, 이후 자원봉사의 세부내용을 자원봉사 신청서(별지 서식 제10호)를 통해 제출하면 완료된다. 단체신청은 불허하며 오직 개인신청만 가능하다.
 - ②선발은 신청 선착순으로 한다.
- 제32조(운영) ①운영일은 일요일, 법정 공휴일, 그리고 임시 휴관일을 제외한 날이 해당된다.
 - ②하루 중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로 한다.
 - ③봉사시간은 1인당 3시간 또는 4시간으로 한다.
 - ④봉사회수는 1인당 연간 2회로 한정하되, 연중 전반기(1월에서 6월까지)에 1회와 하반기(7월에서 12월까지)에 1회로 한다.
 - ⑤봉사인원은 1일당 최대 2명까지로 한다.

제33조(자원봉사 확인) 자원봉사 참여자가 자원봉사 참여에 대한 확인을 요구할 때에는 확인서(별지 서식 제11호)를 발급할 수 있다.

부 칙<2017.1.25.>

이 지침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0.5.27>

이 지침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2.1.14.>

이 규정은 2022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<u>박물관 일지</u>

| 담당 | 팀장 |
|----|----|
| | |
| | |
| | |

○ 관람객 현황

| 구분 | 어린이 | 청소년 | 대학생 | 성인 | 계 |
|----|-----|-----|-----|----|---|
| 인원 | | | | | |
| | 0 | | | | |
| 비고 | 0 | | | | |
| | 0 | | | | |
| 주간 | | | | | |
| 월간 | | | | | |
| 연간 | | | | | |

○ 시설 관리

| 구 분(전시구역) | 이상 없음 | 이상 있음 | 구 분(전시구역) | 이상 없음 | 이상 있음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안내 데스크 | | | 원형 영상관 | | |
| 광고로 보는 한국사회문화사 | | | 세상을 움직이는 광고 | | |
| 광고제작 이야기 | | | 광고 체험 | | |
| 코바코와 공익광고 | | | 교육 영상관 | | |
| 광고 디지털 아카이브 | | | 컨트롤 룸 | | |
| 보 안 | | | | | |

○ 특기 사항

| 구 분 | 내 용 |
|-----|-----|
| | |
| | |
| | |

[별지 서식 제2호]

<u>박물관 비품 관리대장</u>

○ 품목 :

| 날 짜 | 구 매 | 사 용 | 잔 량 |
|-----|-----|-----|-----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
[별지 서식 제3호]

자료기증원

| 연 번 | 명 칭 | 수 량 | 비고 |
|-----|-----|-----|----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
위 자료를 한국광고박물관에 조건 없이 기증합니다.

년 월 일

기 증 인 : (인)

주 소: E-Mail : 기 증 인 :

한국광고박물관 귀중

<u>자료수증증서</u>

성 명 :

주 소 :

귀중한 자료를 한국광고박물관에 기증해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우리 박물관은 이 자료의 활용과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.

년 월 일

한국광고박물관

| <u>수증자료목록</u> |
|---------------|
| |
| |
| |
| |
| |

<u> 자료대장</u>

| 구 분 | 명 칭 | | | | 입수일자 | | | | |
|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--------|-----|-----|
| | | 재 질 | 시 대 | 용도기능 | 입수연유 | 입수처 | 크 기 (cm) | 특 징 | 사 진 |
| 자료번호 | 수 량 | | | | 가 격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
[별지 서식 제6호]

<u>자료카드</u>

(앞면)

| | | | | | 소장구분 | | | 지 | 료번호 | | | |
|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|-----|-------|-----|---|----|-------|---|----|---|
| | | | | | 명 칭 | | | | | 주 | 수량 | |
| | | | | | 이명칭 | | | | | 부 | 수량 | |
| | | | | | 재 질 | | | | L | | | I |
| | | | | | 시대 | | | | | | | |
| | | | | | 용도/기능 | | | | | | | |
| | | 자료사 | <i>ب</i> اً | | 입수일자 | | | 입- | 수연유 | | | |
| | | | _ | | 입수처 | | ' | | 1 | | | |
| | | | | | 입수주소 | | | | | | | |
| | | | | | 가 격 | | | | | | | |
| | | | | | 지정구분 | | | | 지정번호 | | | |
| | | | | | 지 정 일 | | | 1 | 년 월 | Ç | 일 | |
| | | | | | 크 기 | | | | | | | |
| | | | | | 자료기록자 | | | | 자료입력자 | - | | |
| E | - 징 | | | | | | | | | | | |
| = | · 3 | | | | | | | | | | | |
| 보험 | 평가 | | | | | | | | | | | |
| 순번 이동일자 이동구분 | | 보관처 | 반입처 | 이동수 | 냥 | 현수량 | | H | 미고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

(뒷면)

| | 상 세 설 명 | | 자료번호 | |
|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|--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보존처리전 | 보존처리후 | 보존처리일자 | | |
| | | | | |
| | | H 쪼 취기기에 | | |
| | | 보존처리내역 | | |
| | | | | |

<u>자료출납대장</u>

| 소 장 자 료 내 역 | | | 반 | | 출 | | | 반 | | 입 | | 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|----------|-----|----|----|----|----|-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
| 자료 번호 | 자료 명칭 | 수량 | 반입 장소 | 년월일 | 사유 | 담당 | 팀장 | 국장 | 년월일 | 사유 | 담당 | 팀장 | 국장 | 비고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<u>수장고관리일지</u>

| 출입일 (시간) | 출입자 | 출입처 | 출입사유 | 출입 확인자 | 반납자 | 반납 확인자 | 비고 |
|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|-----------|----|
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
[별지 서식 제9호]

<u>자료이용 허가신청서</u>

| 접수번호 | | | | 접수일 | | |
|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
| | | | | | | |
| 성명 : | | | 기관명 : | | | |
| 시청이 | , | | 전화번호 : | | | |
| 신청인 주소 : | | | 전자우편 : | | | |
| | | | | 팩스 : | | |
| | | | | | | |
| 자료이용 - | 구분 : 열람() / 촬 | 영()/ 복 | -제() | ※ 해당 부분이 | ∥ √ 표시하시ऽ | 2. |
| 자료번호 | 자료 명칭 | | 자료 수량 | 자료이용 - | 구분별 수량 | 비고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※ 칸이 |
| | | | | | | 모자라면 |
| | | | | | | 별지에 적어 |
| | | | | | | 첨부합니다. |
| | | | | | | |
| 일시 : 인원 : | | | | | | |
| 목적 :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비고 :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귀 박물관 소장자료를 이용(열람·촬영·복제)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. | | | | | | |
| | | | 년 월 일 | | | |
| 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 | | | | | | |
| 한국광고박물관 귀중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
<u>자원봉사신청서</u>

<u>박물관·도서관 자원봉사 신청서</u>

| O | 름 | |
|----------|----------|---|
| 소 | 속 | |
| 주 | 소 | |
| 인 | 원 | 명 |
| 뫅 | 적 | |
| 봉 및 - | 사일 시간 | ○ 날짜 : 년 월 일 (요일)○ 시간 : 시 분 ~ 시 분 (시간) |
| 연략 | 박처 | ○ 전화 :○ 이메일 : |
| | 타 사항 | |

○ 신 청 일 : 년 월 일

○ 신 청 자 : (인, 서명)

<u>자원봉사확인서</u>

<u>박물관·도서관 자원봉사 확인서</u>

| 이 름 | |
|-------------|---|
| 소 속 | |
| 주 소 | |
| 인 원 | 명 |
| 봉사일 및 시간 | ○ 날짜 : 년 월 일○ 시간 : 시 분 ~ 시 분 (시간) |
| 봉사활동 내 용 | |

년 월 일

한국광고박물관 · 도서관